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69

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 김주영·박 정·허성무

정태호 • 문정복 • 김태선

이학영 · 박홍배 · 이용우

이기헌 · 천하람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수급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 없이 도급계약서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체단체, 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상의 사업을 도급하는 민간사업자 등이 발주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 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하고,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44조 등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 제목 중 "지급"을 "지급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인건비용"이라 한다) 이상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.
- 1. 국가
- 2. 지방자치단체
-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-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도급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한다)

-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전월(인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에 사업이 시작된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건비용을 예치(이하 이 조에서 "인건비용예치"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·수급인·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용의 구분지급, 지급내역 확인 방법, 인건비용예치의 방법·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.

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109조제1항 중 "제43조, 제44조"를 "제43조, 제44조제1항·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 문 및 단서 중 "제43조, 제44조"를 각각 "제43조, 제44조제1항"으로 한

다.

제116조제2항제2호 중 "제48조"를 "제44조제3항·제5항, 제48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(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제44조(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등) ① (현행과 같음) 지급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가 발주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 비에 해당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인건비용"이라 한다) 이상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 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용을 지출해서 는 아니 된다. 1. 국가 2. 지방자치단체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ㅣ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이상의 사업을 하는 도급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한다)

-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인건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은 전월(인건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에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 인건비용을 예치 (이하 이 조에서 "인건비용예치"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 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

<신 설>

제109조(벌칙) ① 제36조, <u>제43조</u>, <u>제44조</u>, 제44조의2, 제46조, 제5 1조의3, 제52조제2항제2호, 제5 6조, 제65조, 제72조 또는 제76 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36조, <u>제43조, 제44조</u>, 제4 4조의2, 제46조, 제51조의3, 제5 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 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 제

	관리하고 도급인·수급인·	근
	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	<u>원</u>
	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	요
	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	하
	<u> 여야 한다.</u>	
	⑦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	느
	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2항	부
	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건비	용
	의 구분지급, 지급내역 확인	방
	법, 인건비용예치의 방법 • 절	차
	및 정보시스템 구축・운영	등
	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	
제	109조(벌칙) ① <u>제</u>	<u>43</u>
	<u>조, 제44조제1항 · 제2항</u>	
	,	
	②제43조, 제44조치	1
	<u> </u>	

433	돈의2에	따라	명단	공개된
체불	불사업주	가 명	단 공	개 기간
중이	제 제363	조, <u>제</u>	43조,	제44조,
제4	4조의2,	제463	조, 제	51조의3,
제5	2조제2형	}제2호	또는	제56조
를	위반한	경우여	에는 그	그러하지
아니	하다.			

제116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- 2. 제14조, 제39조, 제41조, 제4 2조, <u>제48조</u>, 제66조, 제74조 제7항·제9항, 제76조의3제2 항·제4항·제5항·제7항, 제 91조, 제93조,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
- 3. 4. (생략)
- ③ (생 략)

제43조,
<u>제44조제1항</u>
令) ②
 1. (현행과 같음) 2
<u>제44조제3항・제5항,</u> <u>제48조</u>
3.·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